

교원 겸직 허가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55조에 따라 서울여자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교원의 외부겸직에 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시행세칙은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이하 “교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타 교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겸직의 정의) 이 시행세칙에서 “겸직” 이라 함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이 외부의 타 기관에서 다른 직무를 겸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 ① 교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총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교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 또는 본교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단, 교통비, 회의수당 등 실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제5조 (겸직의 신청) ① 교원이 제4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겸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교원이 다음의 영리기관의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6조2에 따른 연구기반을 통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
2.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7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③ 영리기관 사외이사 등의 겸직의 경우에는 임원으로서의 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겸직을 요청한 회사는 의무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임원의 배상책임을 대표이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공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보험가입의무를 면제한다.

④ 교원이 연구년 중인 경우에도 검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사전에 검직허가를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학술활동을 위한 학술단체 또는 학술협회 등의 비상근 임원,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각종 기관의 비상근 자문위원 또는 위원회 비상근 위원 등은 검직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6조 (검직허가절차 및 허가기준 등) ① 검직을 허가받고자 하는 교원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검직허가신청서와 검직대상기관장의 검직허가요청 공문, 기타 구비서류 등을 학과장,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② 교무처장은 검직기관의 성격, 검직근무형태 및 근무내용, 직책, 검직기간, 보수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총장에게 보고한다.

③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토한 후 검직허가여부를 결정한다.

1. 검직허가의 필요성

2. 검직허가기간의 적절성

3. 검직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

4. 그밖에 총장이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 기타 본교에서 부여한 임무 등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검직허가대상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검직하는 교원은 그 해에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수 일체를 보고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 보수 일체의 월별 지급 내역

2. 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

제7조 (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총장은 교원의 검직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외부기관 검직에 따른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본교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 등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2. 교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가 또는 본교의 이익에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 (허가의 취소) ① 교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근무형태, 직책, 검직기관, 보수의 지급여부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거나, 검직기간 중에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때 총장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검직기간 중에 제7조의 허가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교원은 교무처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하며, 총장은 그 검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검직기간) 검직기간은 검직대상기관의 정관에 명시된 임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총장은 검직기간을 제한하거나 정관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 (본교 복무와의 관계) 검직기관에서의 직무수행은 본교에서의 복무로 보지 않는다.

제11조 (행정조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며 그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때 총장은 교

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제청을 할 수 있다.

1. 법령이 정한 영리업무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2.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겸직한 경우
3. 겸직기간 중 겸직허가 제한 및 취소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제12조 (세부사항)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013 제10차 교무위원회>)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시행 이전에 타기관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은 이 세칙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6조 개정, 제6조제5항 및 동조 제6항 신설 <2018 제7차 교무위원회>)

[별표 1]

검직허가신청서 (비영리기관)

경 유	학과장 (전공주임)	대학(원)장

인사계	교무팀장	교무처장	총 장

신 청 자	소 속			
	직 위		보직명(교내)	※ 해당자에 한함
	성 명		주당수업시수/책임시수	/

검 직 대 상 기 관	기 관 명			
	기관의 성격	※ 예 :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		
	검직직위		직무 내용	
	검직기간	____년 ____월 ____일 ~ ____년 ____월 ____일 (총 검직기간 ____년 ____개월)		
	상근여부	상근() 비상근()	근무시간	※ 주 또는 월 근무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보수지급여부	무급() 유급()	월 보수액	※ 교통비, 회의비 등 실비지급인 경우, "실비지급"으로 기재

※ 첨부 : 검직대상기관의 검직허가요청 공문 1부 및 정관 1부.

본인은 교원의 검직과 관련한 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검직 수행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검직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_____ (인)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 사립학교법 제55조,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55조

[별표 2]

검직허가신청서
(영리기관)

경 유	학과장 (전공주임)	대학(원)장	인사계	교무팀장	교무처장	총 장

신 청 자	소 속			
	직 위		보직명(교내)	※ 해당자에 한함
	성 명		주당수업시수/책임시수	/

검 직 대 상 기 관	기 관 명			
	기관의 성격	※ 예 : 사기업체(사외이사에 한함), 벤처기업(연구기반을 통한 창업기업),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중소 기업 등		
	주요사업내용			
	종업원수		상장법인 여부	상장 () 비상장 ()
	총 자산규모		보험가입 여부	가입 () 미가입 ()

근 무 형 태	검직직위		직무내용	
	검직기간	____년 ____월 ____일 ~ ____년 ____월 ____일 (총 검직기간 ____년 ____개월)		
	상근여부	상근() 비상근()	근무시간	※ 주 또는 월 근무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보수지급여부	무급() 유급()	월 보수액	※ 교통비, 회의비 등 실비지급인 경우, “실비지급”으로 기재

※ 첨부 : 검직대상기관의 검직허가요청 공문 1부 및 정관 1부, 임원배상책임보험증권(또는 공증각서) 1부,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 해당) 및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해당) 1부

본인은 교원의 검직과 관련한 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검직 수행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검직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5조, 사립학교법 제55조,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55조